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12.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22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1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16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 현 영)

-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도로명주소를 방문고지 하는 경우 각 동의 통반장 등을 통하여 방문고

지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의2에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 행정안전부에서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적 자문결과 실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검토된 사항이며 행정안전부의 준칙안에 따른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9 호
----------	--------

제출연월일 : 2010.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개정내용

구청장이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하는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신설)

4. 참고사항

가. 개정근거 : 행전안전부 주소전환추진단-255(2010. 9. 1) 및 서울시 행정과-20684(2010. 9. 1)호 관련임(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안 반영 요구

다. 합의사항 : 불필요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0. 9. 30 ~ 10. 20(20일간))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6조의2(실비변상) 구청장은 도로 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